

---

사행산업 건전 이용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관리·운영」 용역사업  
제 안 요 청 서

---

2022.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목 차

I . 과업의 개요 .....	1
II . 과업수행 세부내용 .....	3
III . 과업추진 일반사항 .....	6
IV . 입찰참가 자격, 사업자 선정방법 .....	8
V . 제안서 작성요령 .....	11
붙임 1. 제안서 작성서식 .....	12
2. 제안내용별 목차 .....	14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	20

1. 과업명 : 사행산업 건전 이용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관리·운영 사업」 용역

## 2. 과업목적

- 역량 있고, 전문성 있는 홍보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불법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튜브(“도깨비 튜브”)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과업의 주요내용

- 유튜브 홍보용, 공익광고용 영상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채널 관리·운영
- 유튜브 채널 및 개별 영상 홍보 등

4. 사업예산 : 1억원 (부가세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6. 사업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7. 영상콘텐츠 제작 사양

- 제작형식
  - 표준 동영상 포맷으로 구성된 파일(AVI, WMV, MP4, MPEG 등)
  - 4K UHD(3840×2160) 및 Full HD(1920×1080)급의 고화질 제작 우선 / 디지털 편집 / 디지털 색 보정 사용
  - 실사 촬영, 2D/3D애니메이션, CG 등 최첨단의 제작기법 사용
  - 효과적인 자막, 필요 시 전문 성우 내레이션 녹음, 음향효과, 고품질 BGM 활용, 디지털 믹싱

○ 제작편수

종류	시간 분량	편 수	제작언어	제출방법
유튜브용 홍보 영상	20~30초	2편	한국어	보안 USB 및 외장하드
공익광고 영상	2~3분 내외	8편 이내	한국어	보안 USB 및 외장하드

※ 영상 제작 편수, 편당 시간 분량 등은 용역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8. 성과물의 납품

-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홍보 SNS 등에 게재할 수 있는 편집된 영상과 이에 대한 경과와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 전자파일 납품 : 표준 동영상 포맷의 전자파일 형태 2가지
    - ※ 고화질 : 원본 보관 및 유튜브 게시용 / 저화질 : 기타 SNS 홍보 업로드용
  - 전체 촬영영상(편집가능) 및 원본은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500GB 이상)에 담아 제출을 통해 제출
    - ※ 영상물 파일(원본, AVI, WMV, MP4, MPEG 등)을 수록
    - ※ 과업 수행 중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한 각종 결과물 일체
  - 매달 유튜브 채널의 운영과 관리(구독자, 좋아요, 조회 수, 이벤트 실시 결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최종 완료보고서 1부
    - ※ 중간보고 : 전월 운영 보고서, 당월 운영 계획서
- ⇒ 낙찰업체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등 조정될 수 있음

## II 과업수행 세부내용

### 1. 과업 범위

#### 가. 유튜브 홍보용, 공익광고용 영상 제작

- 유튜브 홍보용 홍보영상 제작 (2~3분 분량 / 총 8편 이내)
  - '위원회 정책소개', '캠페인형' 및 '정보전달형' 등 유형별 영상제작
  - \* 위원회 정책소개 등을 위한 위원장 출연, 인터뷰 형식 영상제작(1~2편) 포함
- 영화관, KTX 등 다중이용시설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용 영상제작 (2편 / 20초~30초 분량)
  -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각성, 불법도박의 사회적 피해 등 핵심 메시지 전달

#### 나. 유튜브 채널 관리·운영

- 구독자, 댓글 등 관리
  - 해시태그 및 댓글 관리로 구독자, 조회 수(시청시간), 댓글, 좋아요 수 증대를 통한 인기채널 형성으로 구독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 유튜브 채널 메인 배너 관리
  - 주요 이슈 발생 등 계기 시 메인 배너를 변경, 구독자와 공감대 형성

#### 다. 유튜브 채널 및 개별 영상 홍보

- 유튜브 채널 자체 광고 진행
  - 채널 내 신규영상, 인기 있는 영상 등에 매달 유튜브 디스커버리 캠페인(영상광고)을 진행하여 신규 구독자 모색
- 위원회 공식 유튜브 연계한 이벤트 추진
  -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계기 발생 시, 유튜브와 연계한 신규 및 기존 영상 시청·구독자 대상 이벤트를 실시, 신규 구독자 확보

※ 상기 과업범위는 제안서 내용, 기술협상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 기본방향

- 가. 동영상의 제작 방향 및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획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창의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 나. 기획 방향에 맞는 시나리오를 집필할 수 있는 전문작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된 후 촬영 콘티(안)과 함께 제출한다.
- 다. 계약 체결 후 촬영계획 및 영상기획 등 추진계획을 작성·제출하고, 홍보 동영상의 시나리오 구성, 촬영과 편집, 애니메이션, CG 등은 사감위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라. 나레이션 필요 시 한국성우협회에 등록된 성우에게 의뢰하고, 영상 전반의 녹음작업은 전문 녹음실에서 실시한다.
- 마. 자막의 활자체와 크기, 화면 색조, 화면구성, 배경음악 등에 관해서 사감위의 수정·보완 요구 시 협의 가능해야 하며, 음원·영상·사진 등 자료의 사용은 저작권료 지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 제작과정 중 변동사항은 사감위와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하고, 사감위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사. 과업수행자의 수준 높은 운영능력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유튜브 채널 관리와 운영, 홍보를 활성화한다.
- 아. 사감위 채널 내에서의 관리자로서의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고, 온라인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3. 과업 수행 지침

- 가. 과업수행자의 작업 단계별 제작물이나 원고는 보고를 통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따르며, 개선 및 보완사항은 수정 후 사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및 음원은 사용 전에 과업수행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감위가 제공한 자료 이외의 자료화면(사진, 영상 등) 및 음원, 폰트 등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출연자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다. 외부촬영 작업 등 기타 발생하는 고용원의 모든 안전사고 및 촬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파손 또는 망실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라. 과업수행자는 납품일 이전에 2회 이상 사감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감위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바. 사감위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 성과물의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한다.
- 아.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최종 성과물과 함께 업무진행 과정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 제작 및 편집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감위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된 후에라도 사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사감위가 판단할 때에는 변경과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1년간(물품검사완료일기준) A/S를 수행하며 기간 중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로 정산한다.

###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익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과업수행 방법 등을 정리한 과업수행 계획표
- 2)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3)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나.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감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라. 기 타

- 1) 과업수행 중 사감위의 잦은 방침 변경, 추가 과업 요구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협의를 통하여 과업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영상 콘텐츠 제작

가. 사감위의 설치 목적과 정체성, 주요 정책사업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 1) 청소년층 등에 흥미로운 느낌을 주는 스토리와 영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2) 위원회 정책,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파급력 있게 효과적으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나. 홍보영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CG 등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한다.
- 다. 기타 과업수행자의 창의적인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 3. 유튜브 채널 관리·운영

- 가. 해시태그 관리로 검색 노출도를 강화하고, 조회수를 높여 사감위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 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히 댓글을 관리하여 기존 구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문의 등 이슈 발생 시 대응 및 보고해야 한다.
- 다. 신규 구독자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정책 이슈 발생 등 필요시 메인 배너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라.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효과적 홍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4. 유튜브 채널 및 개별 영상 홍보

- 가. 채널 내 신규영상 및 인기 있는 영상에 유튜브 디스커버리 캠페인 (영상광고) 등을 진행하여 조회수 및 신규 구독자 증가에 노력한다.
- 나. 사감위 주요행사 등과 연계한 영상 시청·구독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사감위 유튜브 채널로 신규 유입 효과를 증대한다.
- 다. 사감위 채널 ‘커뮤니티’ 피드에서 구독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여 유튜브 채널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기존 구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노출도를 높인다.
- 라. 이벤트 결과, 구독자, 조회 수(시청시간), 좋아요 수 등 유튜브 관리·운영 현황, 홍보 효과 등 그 결과를 보고한다.

## IV 입찰참가 자격, 사업자 선정방법 등

### 1.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방법

#### 가. 입찰참가 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사업자 선정방법

-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2. 선정 절차

###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71호, 2019.12.18.) 적용

### 2) 선정절차 및 기준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사감위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보함.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 외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3) 제안서 설명회 및 일시·장소

- 제안서 설명회(PT) 실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월 ○일, 날짜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장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5동)

※ 제안서 설명회(PT)는 개별 20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시간은 10분 이내로 배정하며 설명회장에는 당해 기관만 입장 및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나. 협상 및 계약

-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3)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다. 유의사항

- 1) 협상 시 용역 과업 수행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조정 가능
- 2)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3.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1)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식
- 2)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V 제안서 작성요령

### 1. 일반사항(권장사항)

- 가.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다. 금액의 경우는 만원 단위 이하는 버림
- 라.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 마.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뒤에 붙이고,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2. 제안서 내용

- 제안서 작성 서식 : **【붙임1】** , **【붙임2】** 참조

#### □ 문의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조사홍보과 담당자 박용인 / 담당 사무관 김계채 <연락처 : (02) 3704-0555 / 3704-0554>
- E-Mail : dokuun@korea.kr



#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총 명
제 안 내 용			

## 목 차

### I. 제안배경

###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III.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주요 결과물과 활용방안
4. 참여인력 현황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 I. 제안 배경

※ 사업 내용, 과업에 대한 이해, 사업추진전략, 최종결과물 및 활용방안 등 발주 기관이 요구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

## II. 제안업체 일반 현황

### 1. 일반현황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6. 사업자등록번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	(요약)		



1) 책임자(총괄)

① 관련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날 짜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비	역할

※ 사업수행 실적은 최신 순으로 작성

2) 참여자1 (촬영)

① 관련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날 짜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비	역할

※ 사업수행 실적은 최신 순으로 작성

3) 참여자2 (편집)

① 관련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날 짜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비	역할

※ 사업수행 실적은 최신 순으로 작성

다.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기간별									비고
			M+1	M+2	M+3	M+4	M+5	...	...	...		
계												



##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2022년 월 일 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배점) : 10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방 법	배 점	비 고	
<b>합 계</b>			<b>100</b>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90)	<b>과업의 이해</b> -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SNS 등 온라인·뉴미디어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심사위원 평가	10	주1)
		<b>과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충실성</b> - 과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 촬영 공간 조성 계획 - 편집 및 스토리보드(기획서) 작성계획	"	20	
		<b>인력 및 실행 능력</b> - 전체 기획 및 진행 능력 - 인력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 전담인력(촬영, 편집 등)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	30	
		<b>장비운영계획</b> - 장비명세 및 확보 방안 - 장비운영계획의 구체성	"	20	
		<b>최종결과물 활용계획 등</b> - 최종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방안 -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	10	
<b>가격 평가(10)</b>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산식에 따름	10		

주1)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①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급		A	B	C	D
배점계수	30	30	26	22	18
	20	20	17	15	12
	10	10	8	7	6

②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